

(互選) .

1 4

.

50 () 40 8

가 .

[[2016.7.22](#)]

51 ()

, .

• •

7

. ,

.

. ,

.

52 () 49 1 " "

.

1. 가 50

가. 가

.

가

.

(訴)

2.

53 () 49 2 " "

14

.

49 2

「

」

.< [2015.12.30](#)>

54 (가) 49 ("

"

)

가

가

가

가

49

3

가

가

49

2

가

.

1

가

1

10

가

.

55 () 가 52 1 가

52

가

가 1 가

1

56 ()

57 ()

8

58 () 61 2 • 3 65 2
• 3 ,

1

.<

[2013.3.23, 2014.11.19>](#)

59 () 62 2

.< [2013.3.23, 2014.11.19>](#)

60 () 63 1 3 " "

가

63 1 2

.<

[2013.3.23, 2014.11.19, 2015.12.30>](#)

61 () 66 1

2 「 」

.< [2013.3.23,](#)

2014.11.19>

1.

2.

3. , , ,

66 1 2 1

, ,

.< 2013.3.23, 2014.11.19>

66 1

.

.< 2013.3.23, 2014.11.19>

62 () <2015.12.30>

24 2 4 가

.< 2013.3.23, 2014.11.19, 2015.12.30>

1. 「 」 72 1

2.

3. 가 . .

. .

.< 2013.3.23,

2014.11.19, 2015.12.30>

1. 13 1 .

2. 33 5 가 가

3. 35 2

4. 63 (62)

5. 37 2 가 6

2

.< 2015.12.30>

62 2() (62 3

)

가

19 , , 가

. < 2014.11.19, 2015.12.30>

1. 24 2 4

2. 34 2

3. 62 3

45 47

가 19

, ,

가

.

[[2014.8.6](#)]

62 3() 40 2 1 2

2014 1 1 3 (3 1 1

)

.

2

(2)

.< [2015.12.30](#)>

1. 23 : 2015 1 1

2. 31 : 2015 1 1

2 2. 37 가 : 2016 1 1

3. 41 : 2015 1 1

4. 52 : 2015 1 1

5. 63 2 : 2015 1 1

[[2014.12.9](#)]

63 () 75 1 3

2 .

< 23169 ,2011.9.29>

1 () 2011 9 30 . , 20 2 2

2012 3 30 .

2 () .

3 () 11

2012 2014 2011 12 31

.

12 2012 2013

1 2012 2 28 2012 4 30

.

4 (가 .)

.

2012 12 31 30 1 3 (21

)

.

5 ()

(

)

60 34

.

6 (가) 35

,

35

5

가

.

7 () 가

.

5 4 1 " 「 」 2 2 " " 「

」 2 1 " .

.

19 2 " 「 」 " " 「 」 "

.

.

8 2 2 " 「 」 " " 「 」 "

.

.

25 7 .

7. 「 」 40

.

49 1 " 「 」 2 8 " " 「

」 2 3 " .

.

3 1 " 71 "

"

16 22 .

36 6 .

66 2 " (67

)" " " .

71 .

3 1 • 2 , 66 2 , 68 2 1 , 2 , 69

1 , 70 2 , 3

9

12

"

"

“ ” .
8 () 「
」 가

< 24425 ,2013.3.23>

1 () . , 6

2 5

6 ()

11 1 , 2 . , 3 , 12 1 , 13 1
 , 2 , 14 , 20 2 , 27 , 30 2 .
3 , 32 3 , 34 1 , 2 . 3 , 37 1 ,
2 , 3 , 4
 , 5 , 6 ,
7 , 38 2 , 3 , 41 2 . , 48 2 ,
50 2 , 58 2 , 59 , 60 2 , 61 1 ,
2 . 3 , 62 1 , 2 3 “
“ “ “ .
13 3 “ “ “ “ .
15 , 34 1 , 37 2 , 4 ,
6 , 41 1 , 4 , 42
2 , 43 1 . 3 , 44 1 . 2 45 2 “ “
“ “ .
1 6 “ “ “ .
2 1 1) 4) 1) 3)
“ “ “ “ “ .

<129>

< 25531 ,2014.8.6>

2014 8 7 .

< 25751 ,2014.11.19>

1 () . , 5

2 4

5 () <104>

<105>

11 1 , 2 • , 3 , 12 1 , 13 1
 , 2 , 3 , 14 , 16 2 , 27 , 30 2
 • 3 , 32 3 , 34 1 , 2 • 3 , 37 1
 , 2 , 3 , 4
 , 5 , 6 ,
 7 , 38 2 , 3 , 40 2 2 ,
 3 , 41 2 • , 48 2 , 50 2 , 58 2 , 59 ,
 60 2 , 61 1 , 2 • 3 , 62 1
 , 2 • 3 , 62 2 1 62 3 "
 " " "
 15 , 34 1 , 37 2 , 4 ,
 6 , 41 1 , 4 , 42
 2 , 43 1 • 3 , 44 1 • 2 45 2 " "
 " " .
 1 6 " " " .
 2 1 1) 4) 1) 3)
 " " " " .

<106> <418>

< 25840 ,2014.12.9>

1 () 2015 1 1 .

2 16

< 26140 ,2015.3.11>

1 () .

2

3 () .
24 4 3 " " 가 " .

< 26728 ,2015.12.22>

1 () 2015 12 23 .

2

3 () .
37 1 1 .

. 「 」 23 1 1 2

< 26776 ,2015.12.30>

2 . , 21 2, 62 2 , 62 2 1 1
2016 1 1 .

< 27370 ,2016.7.22>

1 () 2016 7 25 .

2 () 11

2015 2017 11

12 2016 2017 12

< 27522 ,2016.9.29>

2016 9 30 .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른 감리원(ISA)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부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의 임직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기술, 인증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계획, 분석, 설계, 개발, 운영, 유지·보수, 감리, 컨설팅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0조의2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 정도에 따른 산정기준액에 나목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다목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라목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위반 정도	산정기준액	비 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5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등"이라 한다)된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2억 3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일반 위반행위	1억원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나. 1차 조정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 2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추가적 피해 발생 여부,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산정

개인정보처리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라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1호	1000	2000	4000
나. 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2항제1호	600	1200	2400

다. 법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호	600	1200	2400
라.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3호	600	1200	2400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바.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호	200	400	800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2호	200	400	800
아.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1000	2000	4000
자.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의2	600	1200	2400
차.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의3	600	1200	2400
카. 법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5호	600	1200	2400
타.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파.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7호	600	1200	2400
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3호	1000	2000	4000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3호	200	400	800
너.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4호	200	400	800
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5호	200	400	800
러.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6호	200	400	800

경우				
머.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7호	200	400	800
버.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8호	500		
서. 법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7호 의2	600	1200	2400
어.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8호	600	1200	2400
저.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9호	600	1200	2400
처.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0호	600	1200	2400
커. 법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9호	200	400	800
터.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1호	600	1200	2400
퍼.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	600	1200	2400
허.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0호	100 200	200 400	400 800
고.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1호	200	400	800
노.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3호	600	1200	2400

[2014.11.19] [00001 , 2014.11.19,]

1 () 「 」

.

2 (3)
3 (" ")

「 」 (" ") 18 4

30

.

10

,

30

.

1.

2.

3.

4.

3 () 18 2 「
」 (" ") 15 3

1

.

32

1

34

1

2

.

37

2

가

3

가

(

)

.< 2013.3.23, 2014.11.19>

1. 37 2 1 3

2. 37 2 4

가.

4

가

.

5

가

.

37

1

1

3. 「 」 88 2

(

37

3

)

33

1

37

4

가

6

.

33 6 37 6 7 가

35 1 • 2 41 1 , 36 1
43 1 • , 37 1 44 1
8 , • ,

35 5 41 4 , 35
3 42 2 , 35 4
42 2 9 , , ,
36 6 43 3 • ,
37 5 44 2
10 • ,
45 2 11 .

< 241 ,2011.9.29>

1 () 2011 9 30 .

2 () .

3 () 「

」 가

.

< 1 ,2013.3.23>

1 () .

2 4

5 () .

3 3 2 " " "

"

2 , 3 , 6 7 " "

"

3 " " " " .

<51>

< 1 ,2014.11.19>

1 () . , 6

.

2 5

6 ()

3 3

2

"

"

"

"

.

2

,

3

,

6

7

"

"

"

"

.

3

"

"

"

"

.

<4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19.>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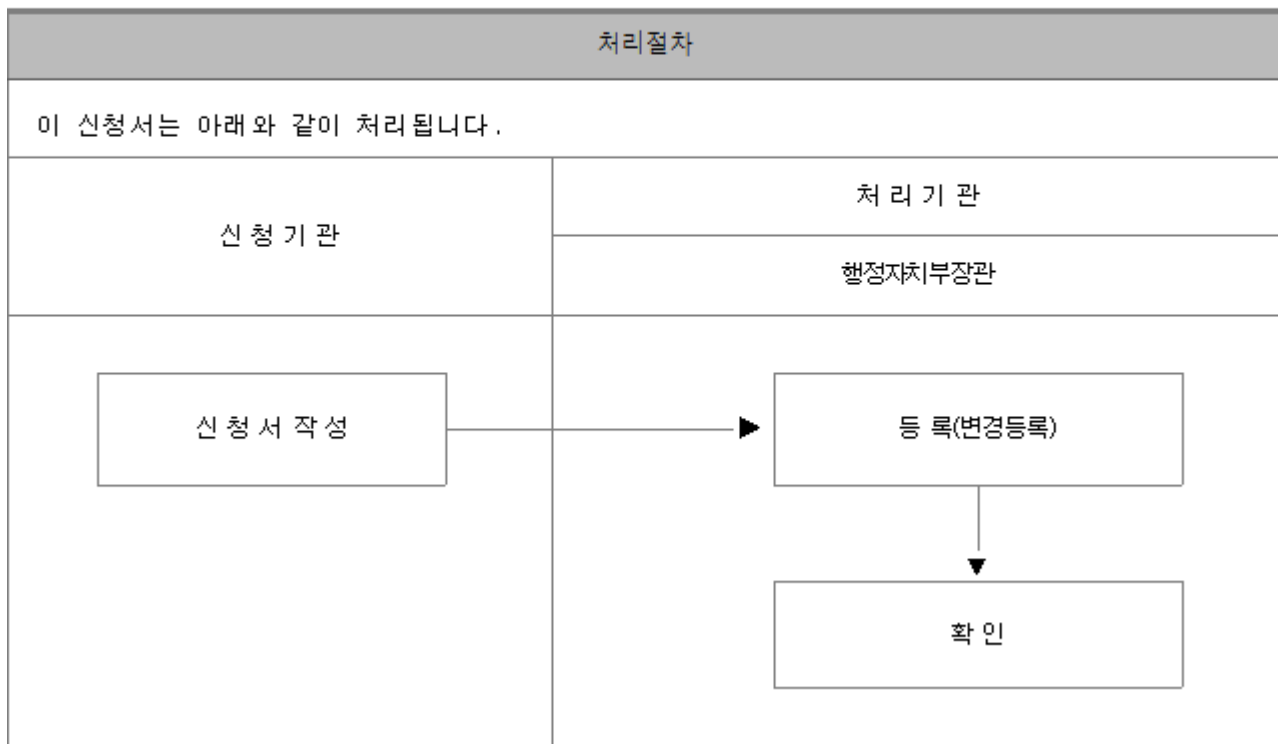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 (재활용품)]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1.19.>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법인 설립일
	소재지	전화번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수		
명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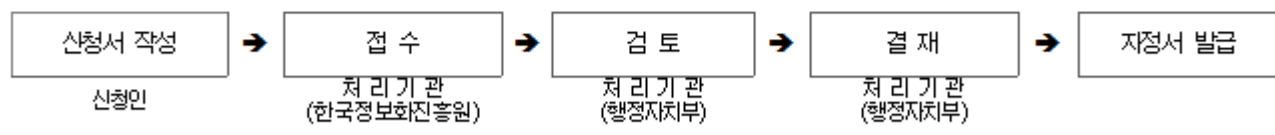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다음의 서류 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 현황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70g/㎡ (재활용품)]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illegible]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	

①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 있음 [] 없음

②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 설비

명칭	설비 등의 세부사항	수량	비고

③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 설비

명칭	설비 등의 세부사항	수량	비고

작성방법

①의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있음'란에 [√] 표시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없음'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제 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

1. 대 표 자:
2.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법 인 명:
4. 주 소:
5. 전화번호:
6. 지정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 하였으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직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1.19.>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일				
구분	종 전		변 경	
수행 인력				
사무실 및 설비				
평가 기관 양도·양수 또는 합병 등	증전 법인	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변경 법인	주소 (전화번호 :)		
		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법인명칭·주소·전화번호 및 대표자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대 표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양수·합병 등의 경우 양도·양수 또는 합병 계약서 등 사본 1부
2. 그 밖의 변경사항 증명서류 각 1부

유의사항

위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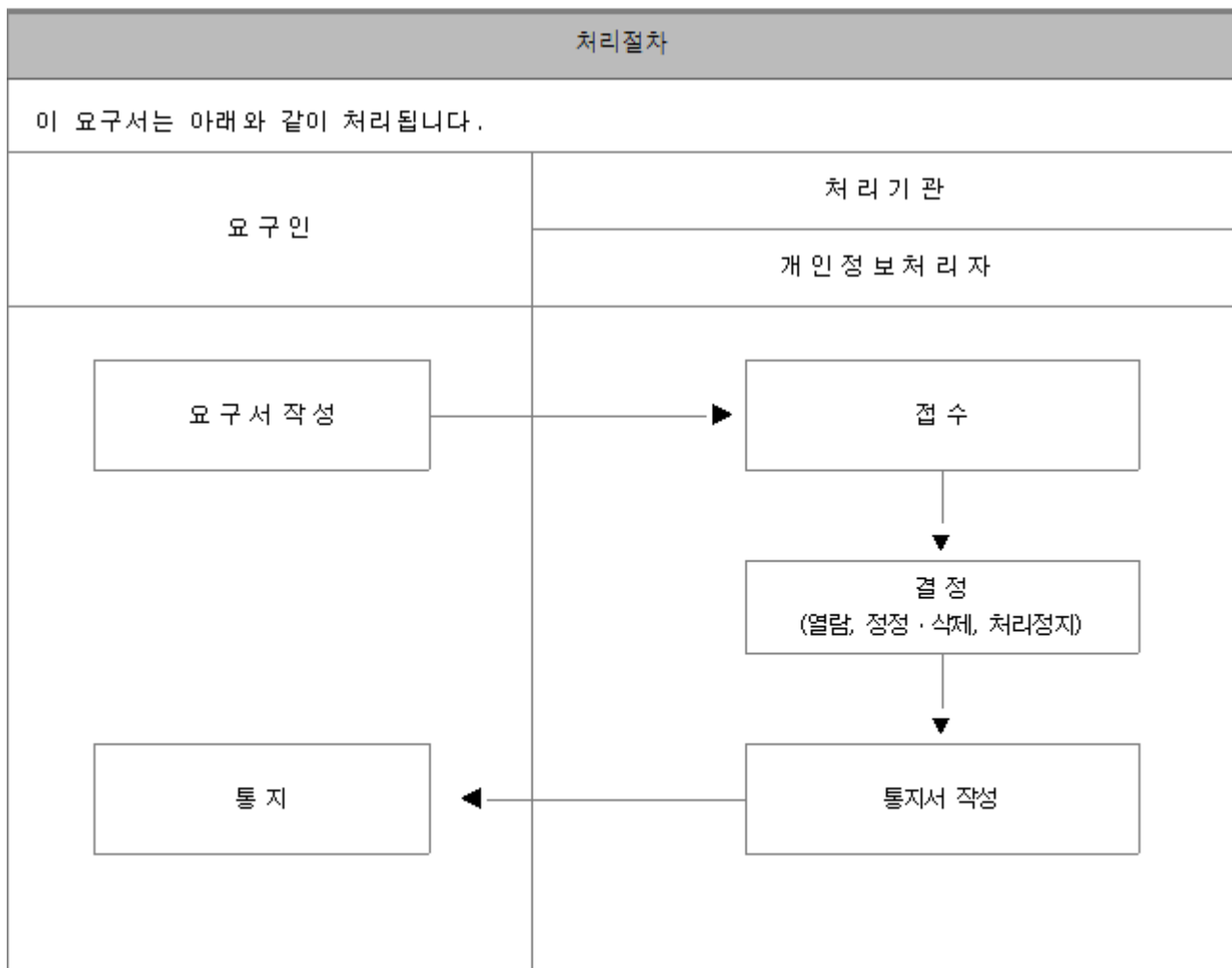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〇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한에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 한에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한에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②우송료	계(①+②)
	원	원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뒤 쪽)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니다.
 -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만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〇〇〇〇 귀하

[2015.5.19] [2015 - 3 , 2015.5.19,]

1 () 「 (" "

) 28 1 15 6 (

67)

가

.

,

.

2 () .

1. " "

.

2. " " , , , , ,

.

3. " " ,

.

4. " "

.

5. " "

.

6. " "

가

.

7. " "

,

,

,

.

8. " " , , , , ,

가

.

9. "P2P(Peer to Peer) "

10. " " . .

11. " " .

12. " "

13. " " , PC .

14. " " (HDD), USB , CD (Compact Disk)

.

3 (.)

.

1.

2.

3.

4. .

5.

6.

7.

,

.

1.

2.

3.

1 2 , 4 8

.

4 ()

.
가
 .

1 2 ,

, 5 .

가

.

• .

1. IP 가

2. IP

3 가 • 가

100 ()

100

.

가

, .

, • .

1. , , 2 10 3
8

2. ,

3. 1 가 , P2P,

.

.

5 (•) 가

1 • ,

6 • .

, 1 「 」 5

• 2 .

.

.

6 ()

- 1.
- 2.
- 3.
- 4.
- 5.
- 6.
- 7.

1. SSL(Secure Socket Layer)

- 2.

7 ()

1. , 1

2. 가

가 ,

8 ()

가 , 가

가

9 ()

(, ,) ,

가 , 가

• •

.

10 ()

,

.

11 () 「 」 8 「 .
 」 (334) 2015 1 1
 3 (3 12 31)

.

< 2009 - 21 ,2009.8.7>
 . , 6 2 4 2010 1 29

.

< 2011 - 1 ,2011.1.5>
 2011 1 5 .

< 2012 - 50 ,2012.8.23>
 2013 2 18 .

< 2014 - 28 ,2014.12.30>
 .

< 2015 - 3 ,2015.5.19>
 .

[2016.9.1] [2016 - 35 , 2016.9.1,]

1 () 「 」 (“ ”) 23 2 , 24
3 29 (“ ”) 21 30
가 가
.

- 2 () .
1. “ ” 가
.
2. “ ”
(集合物) .
3. “ ”
, , .
4. “ ” 「 」 14 가
.
5. “ ” 「 」 2
.
6. “ ” 「 」 2 3
.
7. “ ” 「 」 2 .
8. “ ”
32 2 .
9. “ ” .
, , .
10. “ ”
.
11. “ ” .
가

12. “ ” , 가

13. “ ” 「 」 2 2
 • 가 • •

14. “ ” 가 (AP)

15. “ ” PDA, , PC

16. “ ” , , , , ,
 가

17. “ ” , USB ,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18. “ ” ,

19. “ ” “
 , , , 가
 ”

20. “ ” , , ,

3 () 가

[]

가
 가

4 (•) • • •

1.

2.

3.

15.

•

,

•

■

•

■

2

3

;

•

6 ()

1. IP(Internet Protocol)

가

2. IP (Internet Protocol)

가

가 (VPN : Virtual Private Network)

가

, P2P,

,

,

.

가

• •

1

.

가

가

1

(OS : Operating System)

,

•

가

[] 1

2 , 4 5

7 ()

,

,

.

• ,

.

(DMZ :

Demilitarized Zone)

.

가

1. 33 가

가

2.

1 , 2 , 3 , 4

.

,

, ,

.

.

.

[]

1

2

6

.

8 ()

가

6

.

.

.

.

.

1

.

.

,

.

9 ()

.

.

,

.

1.

,

1

2.

가

가

3.

10 ()

.

1. 가

2.

3.

11 ()

,

.

.

가

,

가

.

가

•

• ,

•

12 (•)

, ,

•

•

•

[]

1

2

1

2

•

13 ()

•

1. (•)

2.

3. 가

가

, 1

•

1. :

2. 1 , , , :

< 2016 - 35 ,2016.9.1>

1 () 2016 9 1 .

2 () 21 2 2

7 4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유형	적용 대상	안전조치 기준
유형1 (완화)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제6조: 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 제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3조
유형2 (표준)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 1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 제4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 15호, 제3항부터 제4항까지 · 제5조 · 제6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 제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3조
유형3 (강화)	·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2016.9.30] [14142 , 2016.3.29,]

1 < 2012.2.17>

1 ()

[2012.2.17]

2 ()

. < 2012.6.1>

1. " " (「 」 2 5

.) (商 行 爲) .

2. " " . , (

.)

(" ")

. , 「 」 2 3

3. " " (業)

4. " " (

가 .)

5. " " .
가. 가 (.)

. 가 가

6. " " (가 .) .

[2012.2.17]

3 () (「 」 2 6)가

13 2 (.)
 . , 1

1. 가

2. (「 」 「 」)

가 13
 15 , 17 19
 「 」 . 가 ,
 12 15 , 17 20

20 2 .
 [[2012.2.17](#)]

4 ()

[[2012.2.17](#)]

2

5 () 「 」 6 2 2
 가 (「
 」 2 2) (「
 」 2 1 .)

가

. < [2012.6.1](#) >

(「 」 2 2 .)

(

) , 가

.

가 , ,

, , .

. ,

.

가

.

가

가

4

5

.

가 4 5

.

[[2012.2.17](#)]

6 ()

. ,

가

.

.

1

가

(. .

) 가

「

」

.

< [2016.3.29](#) >

1

가

. .

.

.

[[2012.2.17](#)]

7 ()

.

[[2012.2.17](#)]

8 () 가

(" ")

,

("

")

.

가

，

．

1.

2. 가

3.

， 가

．

．

가

，

．

．

[2012.2.17]

9 ()

」 2 1 1 (「 " "

)]

．

(가

)

．

．

.< 2016.3.29>

1. (가)

2.

3. ． ． ． ． (" ． ")

． ． (．)

4.

5.

[2012.2.17]

9 2() 「
 」 2 1 9 3 (「
 " ")
 가 가

1. (")가
2. 33
3. 13 1 1
 2
- 2

1. 33
 - 2.
 3. . . .
- [[2016.3.29](#)]

10 () 가
 .
 1.
 2. 가 ()
 3. .
 4.
 5.
 6.
 1 가
 가
 [[2012.2.17](#)]

11 ()
 (3) 「
 」

가 가 가

[[2012.2.17](#)]

12 ()

• • • •

• , , 가

• < [2016.3.29](#) >

1. (), ,

2. , ,

3.

가 1

•

1

1

[[2012.2.17](#)]

13 () 가

• •

• < [2016.3.29](#) >

1.

2. • •

3. 12 • • • •

가

•

,

가

• •

1. , •

2. •

2 2.

3. 가 (가 가)

4.

5. (" ") .
()

6. . . .

7. .

8. ,

9. ()

10. 가
3 (" ")
24 1
(15 1
, 24 3)

11.

.
1 2 ,
. .
2 .

[2012.2.17]

14 ()
가
가 ,

[2012.2.17]

15 () 가 7
 , 가
 (" ") 가
 3
 . ,
 .
 , 가
 3
 가
 .
 .
 2
 18 1 5 .

[[2012.2.17](#)]

16 <2005.3.31>

17 ()
 (가
) . < [2016.3.29](#)>

1. 13 2 7 . ,

7
 2. 13 2 ,
 1

7
 3. 21 1 1 2 가
 가 7

1 , 가 6
 2 5 .<

[2016.3.29](#)>

1. ,

2. 가 가

3. 가 17 1 3

1 2 가 「

」 2 3

(" "

)

· ,

가

,

·

3

·

3

가

·

가 3

(相計)

·

·

가 6

·

·

1

가

·

17 1

가 ,

·

17 3

가

·

,

가

17 1 3

1

7

·

[[2012.2.17](#)]

19 ()

가

·

1. :
가.
가 (販賣價額)

2. : 가

1

[2012.2.17]

20 () (" "
) 가 가
. < 2016.3.29 >
(" ")
(" ")가 (가
) . .

, 가 가

.

. < 2016.3.29 >

.

.

[2012.2.17]

[2016.3.29]

20 2() 20 1

.

20 2

가

. , 가 가

.

20 1

12

15 , 17 18

. ,

가

가 .

()

. , 가 가

[2012.2.17]

20 3() 가

7 8 " " 13 2 5 14 1 " " "

1. 가

가. 13 2 5

. 14 1

2. 가

가. 7

. 8

[2016.3.29]

21 ()

1.

2.

, ,

3.

4.

5. 가 가 ,

6.

가. 가

·
·

가 가

7.

·

가

·

[[2012.2.17](#)]

22 ()

17 1 3

18 1 5

·

가

12 1

·

·

·

·

.< [2016.3.29](#)>

[[2012.2.17](#)]

3

23 ()

(" ")

,

·

가

가

·

[[2012.2.17](#)]

24 ()

("

")

· , 8 4

·

1. 「 」

2. 「 」 38

3. 10

3 " , 9 10 " " " 「
 」 "

[[2012.2.17](#)]

24 2() 가

, ,
 (" ") 「
 」
 1

. 가
 , 「
 」 64 2 1

[[2012.2.17](#)]

25 ()

.

[[2012.2.17](#)]

4

26 () , . .

. . . 1 .

, . 가 . . .
 , . 가 . . .

. 가 . 1 2
 , .

() .

, . 가 5
 32 34

가 . , 33 1

1 「 」 33

6

[[2012.2.17](#)]

27 ()

가

1

3

가

[[2012.2.17](#)]

28 ()

27 1

가

[[2012.2.17](#)]

29 (가 •)

가 •

(" 가 • ")

가 •

,

,

가 •

1

가 •

가

가 •

[[2012.2.17](#)]

30 () 31

, . . .

.

.

.

.

.

.

. .

가

.

[[2012.2.17](#)]

5

31 ()

, .

.

.

가

32

가

32

.

가

3

.

1

10

.

1

가

32

.

[[2012.2.17](#)]

32 ()

가

. < [2016.3.29](#) >

1. 5 2 5 , 6 1 , 7 , 8 , 9 , 9 2, 10 , 11
 , 12 1 3 , 13 1 3 5 , 14 , 15 ,
 18 , 19 1 , 20 , 20 2, 20 3, 22 1 , 23 2 , 24
 1 . 2 5 9 , 27 2 , 29 1 2 , 32

2 2

2. 21 1

1

.

1.

2.

3.

4.

5.

2 3

4

.

1

.<

[2016.3.29>](#)

1. 1

가

2.

3.

가

가

[[2012.2.17](#)]

32 2()

가

1.

가 21 1 1

2.

가

,

가

가

1

,

,

,

가

.

「

」

29

.

가 1

(

)

.

1

7

.

1

가 4

,

「

」

.

「

」

15

.

[[2016.3.29](#)]

33 () , • • •

31

32

(" ")

.

, • • •

가

32

.

가

32

.

1

.

,

, •

• •

.

[[2012.2.17](#)]

34 () 32 4 가
가

.

5

.

1

.

1

1.

2.

3.

4.

.

가

가

가

•

.

1

,

,

•

「

」

55

4

55

6

.

[2012.2.17]

6 < 2012.2.17>

35 () 17 19

[2012.2.17]

36 () (訴)
가 (居所)
가

[2012.2.17]

37 ()

1

[2012.2.17]

38 ()

37 1

3

26

6

3

「 」 127 , 129 132

[2012.2.17]

39 (「 」)

「 」 42 , 43 , 43 2,
44 , 45 52

「 , • • •
」 50 1 4

•
38 •
, , ,
」 53 , 53 2, 54 , 55 55 2

「 」 62 .

[[2012.2.17](#)]

7 < [2012.2.17](#)>

40 () 3 1
. < [2016.3.29](#)>

1. 26 1 • , •
2. 32 1
3. 32 4

[[2012.2.17](#)]

41 <2016.3.29>

42 () 3 .
1. 12 1
2. 24 8 9

[[2012.2.17](#)]

43 () 1 .
1. 13 1
2. 13 2

[[2012.2.17](#)]

44 () , ,
40 43
(科) . ,

[2010.3.22]

45 () 32 2 1

1

. < 2016.3.29 >

1

. <

2016.3.29 >

1. 9 2 1

2. 21 1 1 5

3. 8 4 24 1

4. 15 1 24 2

5. 8 4 24 7

6. 15 1 24 7

7. 32 2 2

8. 39 2 「 」 50 1 1

9. 39 2 「 」 50 1 3
3

10. 39 2 「 」 50 2

.

500

. <

2016.3.29 >

1. 6

.

2. 10 1 13 1

3. 12 2 3

4. 13 2 .

5. 13 3

6. 20 3 1 가 13 2 5
1 3

.< 2016.3.29>
[2012.2.17]

< 6687 ,2002.3.30>

1 () 2002 7 1 .

2 ()

17 12 .

. , 2 12

24 .

, .

3 ()

4 ()

5 ()

6 ()

,

< 7315 ,2004.12.31>

1 () 2005 4 1 . < >

2 9

10 ()

34 4 " 55 5" " 55 6" .

< 7344 ,2005.1.27>

1 () 3 .

2 ()

18 7 " 2 7 "

< 7487 ,2005.3.31>

1 () . , 13 2 10 , 24 2
4 24 2 2 1 , 13 3 , 17
2 , 17 6 32 1 3

2 () 13 1
3 , 2 32 1 가

13 2

3 () 13 3 32
1 가

4 () 15 1
2 가

5 () 16
가

6 (가) 17 2
6 가

7 (가) 24 1 10 가

8 4 가

8 () 24 2 4

가

가

9 () 24

9 가

10 () 24 2 2 32 1

가

11 () 31 1

가

12 (가) 34 4

< 8538 ,2007.7.19>

3

< 8635 ,2007.8.3>

1 () 1 6

2 41

42 () <45>

<46>

3 4 " 2 9

가 " " 「

」

<47> <67>

43 44

< 10172 ,2010.3.22>

< 10303 ,2010.5.17>

1 () 6 . < >

2 8

9 () <59>

<60>

18 2 " " " "

<61> <86>

10

< 11326 ,2012.2.17>

1 () 6

2 () 20 2 1 2

3 () 38 5

4 () 12 1

1

< 11461 ,2012.6.1>

1 () 3

2 9

10 () <16>

<17> 11326

2 1 " 「 」 " " 「 」 "

5 1 " 「 」 " " 「 」 "

<18> <25>

< 11841 ,2013.5.28>

6

< 14142 ,2016.3.29>

1 () 6 , 9 3 , 12

1 , 13 1 22 2

2 (가)
2 3

6

3 ()
.

[2016.9.30] [27530 , 2016.9.29,]

1 () 「 」

.

[2012.8.13]

2 () 「 」 (" ")
2 5 " " 가 ("
" ")

. < 2013.3.23 >

1. . , ()

.

2. 3 1 ()

3. () . , 「
」 6 1 가 .

[2012.8.13]

3 () 3 4 "
"

.

1. 「 」 38 1 8

2. 「 」 3

3. 가 • 가

[2012.8.13]

4 () 5 1 "
"

.

1. 2 「
」 2 1 (" ")

3.

5 () 5 2 「
」 2 2 (" ") 가
.

5 2() 6 2 " 1

"

.

6 (가) 6 3 가
 . , 20 1
 (" ")

2.

4 6

)

(「 」

.

「 」

」

.

3. 가 6 2

[[2012.8.13](#)]

7 () 8 1 "

"

· ,

.

[[2012.8.13](#)]

8 () 8 1 "

,

"

,

(

"

"

)

.

1. 「 」

2. 「 」 2 2 2

3. 가 가 ·

가

4. 「 」 2 3

5. 「 」 2 11

6.

[[2012.8.13](#)]

9 () 8 2

가

.

가

.

[[2012.8.13](#)]

10 () 8 5

가

.

1. () ·

2.

•

가 가

[[2012.8.13](#)]

11 () 9 1
가

1.

2.

[[2012.8.13](#)]

11 2() 9 3
" " . <

[2016.9.29>](#)

1. (9 3 1 가
)
2. [(9 3 1
가)],
9 3 5 " " .
1. 「 」 33 (" ")
2. 「 」 60 (")
")
3. 「 」 32 .
(" ")
4. 「 」 29 (")
")

[[2012.8.13](#)]

11 3() 「
」 2 1 9 3
(" ") 9 2 1 2

1. 가 33 1 ("
")

2. 가 가

가

3

가

9 2 1 3 " 9 2 1 1 •
2 , 2 3 가

[2016.9.29]

[11 3 11 4 <2016.9.29>]

11 4() 10 1 6 " "
9 2 (" ")

. < 2016.9.29>

[2012.8.13]

[11 3 <2016.9.29>]

12 () 11 2 "
"

1.

2.

3.

[2012.8.13]

13 () 12 1
()
• • • • (•
) (가)
가 15 1

. < 2016.9.29>

1. 13 2 10 24 1

2. 24 3

1 • • 「 」 36 1
• • , 1 2
(2)

< 2016.9.29>

1. (). , .
2. 1
 .< 2016.9.29>
[2012.8.13]
14 <2012.8.13>
15 () 12 1 3 " "
() .
[2012.8.13]
16 () 12 2
15
 . < 2016.9.29>
1
 .<
2016.9.29>
[2012.8.13]
17 (.) 12 3
가
 , .
< 2016.9.29>
[2012.8.13]
18 () 13 • 16 17
가 .
1
1 ,
 .
1 2
 .
[2012.8.13]

19 () 12 4

,

가 1

(

)

.

[[2012.8.13](#)]

19 2() 13 2

"

가

"

.

1. 가 ()

2. 가 ()

()

[[2012.8.13](#)]

[19 2 19 3 <2012.8.13>]

19 3(3) 13 2 10 " 3 "

.

1. 13 2 10 「 」 28

2 5

15 3 1

가. 24 1

("

")

. 「

」 38

「

.

」

.

2. 「 」 28 2

1 1

가

가

.

1. 가 28 3 4

2.

3. 가 100 10

(

,

)

4.

5. 가 ,

6.

7. 가

8. 「 」 2 6 「

」 2 1 2

[2012.8.13]

[19 2 <2012.8.13>]

20 () 13 2 11 " "

.

1. 가 • 가 가

2. , , ,

[2012.8.13]

21 () 17 2 6 " "

13 2

5 (" ")

가

() . <

2016.9.29>

[2012.8.13]

21 2() 17 6

.

1. :

2. :

3. :

4. 1 3 :

[2016.9.29]

[21 2 21 3 <2016.9.29>]

21 3() 18 2 "

" 100 15 . < 2016.9.29 >

[2012.8.13]

[21 2 <2016.9.29 >]

22 () 18 3

" " 가 (

) ("

")

가 .

[2012.8.13]

23 () 가 (相計)

18 6 .

1. ()

2. 17 1 3

18 1 (가)

1 (

) .

1 2

.

[2012.8.13]

24 () 18 8 "

" .

1. 가 가

2. 가

[2012.8.13]

25 () 20 2 " (가

) • • " 13

1 (가)

, 20 2 ("

")가 . < 2016.9.29 >

1. (「 」 2 10 .)
 (「 」 2 5
 .)

2. 가
 20 2 " .
 , , , , 가
 .< [2016.9.29](#)>

1.
 2. 가
 [[2012.8.13](#)]
 [[2016.9.29](#)]

25 2()
 20 3 .
 1. .

2.

3. 3
 10
 [[2012.8.13](#)]

26 () 21 1 6 가 "
 "

1.

2. , ,

[[2012.8.13](#)]

27 () 21 1 6 "
 "

1.

가. 「 」 5 3 1
 . 「 」 2 5 6

·
·

· 가

2.

[[2012.8.13](#)]

28 () 24 1
가

·

1.

2.

가

3.

가

4.

5. 19 3 2 5 8
24 2
12 1
· ·
24 5

13 1
· ·
· < [2016.9.29](#) >

·

1.

가

2.

가

3.

가

「

」

100

10

가

[「

」 38 1 8
(6
) 「 · 」

,

]

4.

5. 19 3 2 5 8
1 3

·

[2012.8.13]

28 2 <2016.9.29>

28 3() 19 3 1 3 (" 3 "

) 24 4
1. 3 (2 3)
3 (가 3)

2. 3 1 가 3

3. 가 3

가. 가 2

. 3 가 2 3 가

4. 3 가 가

[2012.8.13]

28 4(가) 24 10 가,
, 「 」 45 , 47 48

[2012.8.13]

28 5() 26 6 (" "

) 1 ,
「 」 38 , ,

[2012.8.13]

29 () 27 3
()

- 1.
- 2.
- 3.

27 3

1

[2012.8.13]

30 () 28

1

가

[2012.8.13]

31 (가·) 29 1 가·
가

1. 가·
- 2.
3. 가·
4. 가·
5. 가·

1

가

[2012.8.13]

32 () 30 1 (" · ") ,
· ·
· ·

· < 2016.9.29 >

[2012.8.13]

33 ()

32 3

1.

2.

3.

32 3

.<

2016.9.29>

1.

2.

3

21 3

3.

[2012.8.13]

34 () 32 4 1 .

[2012.8.13]

34 2() 32 2 1

32 2 4

32 2 2 " "

1. :

2. :

3. :

[2016.9.29]

34 3() 32 2 3 "

. " .

1.

2.

3.

4.

5. .

32 2 3 가

1. . , . .
 - 2.
 - 3.
 - 4.
- [[2016.9.29](#)]

34 4() 32 2 4 .

[[2016.9.29](#)]

35 () 33 1 "

- 1.
 - 2.
 - 3.
 4. .
- [[2012.8.13](#)]

36 () 33

10 , 32

1

[[2012.8.13](#)]

37 ()

1 60 가

가 30 .

[[2012.8.13](#)]

38 () 34 1 "

가 1 3 가

1. 가 :
(가)
100 10 , 가
2. 가 : 가
3. 가 : 가
34 1 2 .

[[2012.8.13](#)]

39 () 37 1

- 1.
- 2.
3. .
4. . ,
- 5.
6. ()
7.
1 .
1. ,
2.
37 1 1 1 4 , 6 7
2 20

[[2012.8.13](#)]

40 ()
2 (2)

. < [2016.9.29](#) >

1. 5 2 : 2015 1 1

2. 6 가 . .
- . : 2015 1 1
3. 11 2 1 가 : 2015 1 1
4. 11 4 가 : 2015 1 1
5. 20 : 2015 1 1
6. 25 2 : 2015 1 1
7. 28 : 2015 1 1
8. 31 가 . : 2015 1 1
9. 39 : 2015 1 1

[[2014.12.9](#)]

41 <2012.8.13>

42 () 45 1 3
3 . < [2016.9.29](#)>

[[2012.8.13](#)]

< 17684 ,2002.7.24>

. , 5 . 6 . 8 . 9 . 14 28 2
3 .

< 18312 ,2004.3.17>

.

< 19354 ,2006.2.22>

. , 6 2 3 3
, 19 2 28 2 28 5 2006 4 1

.

< 19507 ,2006.6.12>

.

< 19783 ,2006.12.29>

() 2007 1 1 .
()

19 2 1 , 2 , 3
" 1 10 가 " " 1 1
가 가 "
13 2 10 " 3 "

1. 13 2 10 「 」 28
2 5 15 3 1

가. 24 1 (" "
)
. 「 」 38 「 .
」 .

2. 「 」 28 2

< 19958 ,2007.3.27>

1 () 2007 3 28 . < >
2 6
7 ()

35 1 .
1. 「 」 33
<16>
8

< 20329 ,2007.10.16>

1 () 2007 10 20 .
2 () 21 2
가 .

< 20351 ,2007.10.31>

1 ()

2 7

8 () <19>

<20>

2 1 4 " 「 」 41 1 " " 「 」 43

1 " .

<21> <27>

9

< 20587 ,2008.1.31>

1 () 2008 2 4 .

2 ()

2 1 4 " 「 」 43 1 " " 「 」 6 1 "

3

< 21214 ,2008.12.31>

1 () . < >

2 4

5 () <169>

<170>

2 1 4 " " " , " " "

" .

19 2 1 1 " " " .

<171> <175>

< 21765 ,2009.10.1>

1 ()

2 3

4 () <24>

<25>

27 1 " 「

」 2 4 5

" " 「

」

2 5 6

" .

<26> <31>

5

< 22151 ,2010.5.4>

1 () 2010 5 5 .

2 3

4 () <144>

<145>

13 1 " 「

」 21 1 " " 「 」 36 1 " .

<146> <192>

< 22424 ,2010.10.1>

1 () .

2 9

10 ()

27 1 가 " 「 」 4 3 1 " " 「 」 5

3 1 " .

<20>

< 22467 ,2010.11.2>

.

< 22493 ,2010.11.15>

1 () 2010 11 18 .

2 3

4 () <81>

<82>

19 2 3 8 "「 」 2 2 " "「 」

2 1 2 " .

<83> <115>

5

< 22637 ,2011.1.24>

1 () 2011 1 24 . < >

2 21

22 ()

19 2 3 8 "「 」 2 5 " "「 」 2 6
" .

23

< 22648 ,2011.1.28>

. , 28 2 6

.

< 24034 ,2012.8.13>

1 () 2012 8 18 .

2 () 21 2

가

3 () 2012 9 1 4 1 , 11 2 2 3
35 2 "「 」 " "「 」

" , " . " " .

4 ()

34 1 .

1 가

1 , 2

3 가

2 3 .

2

1 1

1

5 ()

38 2 2

6 ()

42 3

3 1 가

1

< 24436 ,2013.3.23>

1 ()

2

3 ()

2 3 " " " "

< 25840 ,2014.12.9>

1 () 2015 1 1

2 16

< 27530 ,2016.9.29>

1 () 2016 9 30

2 ()

가

21 3

[별표 1] <개정 2016. 9. 29.>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최대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처분 내용		
		1차	2차	3차
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의 효력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통한 회원탈퇴 등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열람·보존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바. 법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아.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대금지급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조제4항	3개월	6개월	12개월
자.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차.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카.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타.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파.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거나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하.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너. 법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더.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확인 및 청약확인에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청약내용의 확인·정정·취소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러.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머.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버.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서.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증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어.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증개자 및 통신판매증개 의뢰자의 책임을 게을리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저. 법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처.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커.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약철회등과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 관련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터.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2월
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허.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고.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적절한 수준이 아닌 경우 노. 법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금 또는 지연배 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 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도.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2 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로. 법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 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 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 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	법 제32 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모. 법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대금예치 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	법 제32 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보.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검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32 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소.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 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오.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 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조.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2 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2] <신설 2012.8.1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8조제2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소비자피해 정도에 따른 조정,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 1)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34조 및 별표 1의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개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 영업정지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최대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 3)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나.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정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라. 부과과징금

- 1)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 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파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파징금의 세부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 그 밖에 파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개정 2016. 9.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 제1호	100	200	500
나.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1호	200	500	1,000
다.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 제2호	100	200	500
라.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 제3호	100	200	500

마.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 제4호	100	200	500
바.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 제5호	100	200	500
사. 법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 제6호	100	200	500
아.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2호	500	800	1,000
자.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3호	200	500	1,0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4호	200	500	1,000
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5호	200	500	1,000
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6호	200	500	1,000
파. 법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법 제45조제1항	5,000	8,000	10,000

계속한 경우				
하.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7호	200	500	1,000
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8호	200	500	1,000
너.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9호	200	500	1,000
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10호	200	500	1,000

[2016.9.30] [01327 , 2016.9.30,]

1 () 「 」

.

[2012.8.17]

2 () 「 」

(" ") 2 2 " "

.

1. . . .

2. . .

[2012.8.17]

3 () 2 4 " "

.

[2012.8.17]

4 () 3 2 1 "

" . 13 2

(「 」 2 1

.) 가 .

1 (" ")

. . ,

.

[2012.8.17]

5 () 8 3 "

" . .

,

, (.) .

, .

[[2012.8.17](#)]

6 () 8 4

.

1. , , , ,

2. 24 1 (" ")
()

3.

4.

5.

6.

7.

가

[[2012.8.17](#)]

7 () 10

1 1 6 가

. , 10 1 5 가

.

1

가 가 12 4 「

」 (" ") 19

.

10 1 1 6

.

,

.

[[2012.8.17](#)]

8 () 12 1 13 1

1

.

.

.

.

(

.

) ,

3

30

. < [2016.9.30](#) >

13 1 1 " " 2

2 2

.

2 2

19 3 1

가

.< 2016.9.30>

1

.

.

.

.

3

.< 2016.9.30>

[2012.8.17]

9 () 12 2 16 1

4

()

.

.

.

.

.<

2015.1.19, 2016.9.30>

[2012.8.17]

10 (.) 12 3 17

5

.

.

.

5

.

.

.

.

.<

2016.9.30>

1

가 「 가가 」 8 6

1

「 가가

」

9

.

.

.

.

.

(

)

.< 2016.9.30>

「 가가

」

13 5

1

.

.

.

.

1

가

.< 2016.9.30>

[2012.8.17]

11 () 18 1 「

」 2 3

.

.

.

.

1

가

.< 2016.9.30>

[2012.8.17]

11 2(가) 20 1 "

" 가 ,

가 .

1. 가 . :

2. 가 13 2 :

3. 가 : 14 .

.

가 1 2 3 .

[[2012.8.17](#)]

11 3(.) 21 1 7

" " ,

,

.

[[2012.8.17](#)]

12 () 24 1

가

.

1. 가 가

2. 가

24 1 가

.

1. 28 3 3 . ,

2. 가

(

)가

24 1 가

.

1. 가

가

: 「 」 2
6 「 」 2 1 2 (") 30

2. 1

:

[[2012.8.17](#)]

13 () 37 1 39 1
6 .

[[2012.8.17](#)]

14 ()
2 (2)

.

1. 4 : 2015 1 1

2. 5 : 2015 1 1

3. 7 : 2015 1 1

4. 8 : 2015 1 1

5. 9 : 2015 1 1

6. 10 . : 2015 1 1

7. 11 2 가 : 2015 1 1

8. 11 3 . : 2015 1

1

9. 12 : 2015 1 1

[[2014.12.31](#)]

< 740 ,2002.9.14 >

.

< 764 ,2004.5.8>

.

< 822 ,2006.7.31>

.

< 951 ,2011.2.10>

. , 7 2

6

.

< 991 ,2012.8.17>

1 () 2012 8 18 .

2 () 2012 9 1 4 1 " 「

」 " " 「 」 " .

< 1118 ,2014.12.31>

2015 1 1 .

< 1136 ,2015.1.19>

.

< 1327 ,2016.9.30>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9. 30.>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참고 사항	판매 방식	[]TV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신문·잡지, []기타		
취급 품목		[]종합물, []교육/도서/완구/오락, []가전, []컴퓨터/사무용품, []가구/수납용품, []건강/식품, []의류/패션/잡화/뷰티, []레저/여행/공연, []성인/성인용품, []자동차/자동차용품, []상품권,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 297mm[백상지 80g/㎡]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2.8.17>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

위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1. 서비스 제공자
2. 서비스 이용기간
3. 서비스 제공조건
4. 서비스 등록번호
5. 서비스 이용 확인 연락처

년 월 일

서비스 제공 사업자명
또는 관련 단체명

직인

2210mm× 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6. 9. 30.>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

위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1.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자
2. 서비스 이용기간
3. 서비스 제공조건
4. 서비스 등록번호
5. 서비스 이용 확인 연락처

년 월 일

통신판매중개(업)자명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9. 30.>

제 호

통신판매업 신고증

1. 상 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생년월일(남·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 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9. 30.>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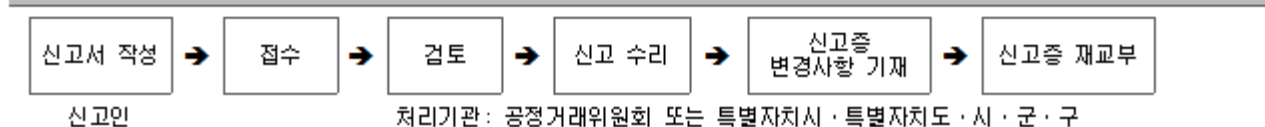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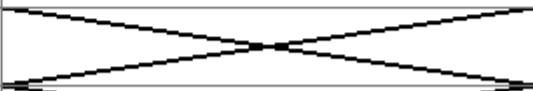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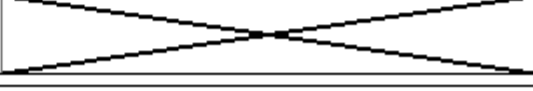
처리절차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9. 30.>

[]휴업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서
[]영업재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신고 항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폐업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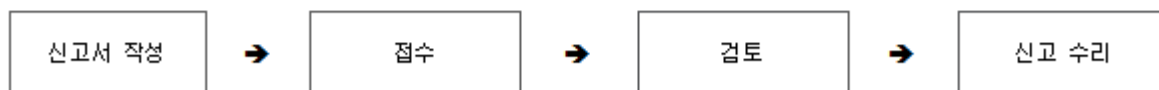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8.17>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단체명	
	주사무소의 주소	전 화번호
	지부의 주소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홈페이지 주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설립 연월일	
	회원 현황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합니다)
	설립 목적	
	사업 내용	
기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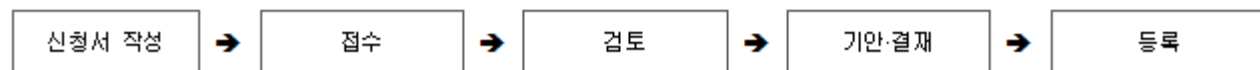
※ 위 신청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2. 인력, 재정 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자료 3.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에 관한 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210mm× 297mm[백상지 80g/㎡]

:
: kingdom95@nate.com
: 2017.3.30



가